첨단융합대학 장학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시행세칙 및 내규)에 의하여 첨단융합대학의 교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교외 장학생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첨단융합대학 교내 장학금은 중앙장학금과 RC장학금으로 구분하고, RC장학금은 아래와 같다.

1. 학부리더십 장학금
2. 첨단융합대학 자율장학금

② 교외 장학금은 외부 재단의 요청으로 단과대학 대표 장학생을 추천하는 장학금을 통칭한다.

제3조(수혜대상) 첨단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제4조(장학금 신청의무) 모든 RC장학금은 학생 본인에게 규정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 수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적용범위) 첨단융합대학 장학금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장학운영위원회)

① 첨단융합대학 장학금 지급 등의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첨단융합대학 장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는 학부(과)장 회의로 대체한다.

②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교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장학생 선발)

① '학부리더십장학금'은 학생회 간부 및 학부(과) 간부에게 지급하며 선발기준 및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발기준 : 해당 학년도 학기에 단과대학 학생자치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학부 재학생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복수전공 등 학칙에 규정된 정규 학기를 초과한 자
   2) 교환유학, 복수학위, 자비유학, 인턴십(선택형 4+1 인턴십 포함) 등 해당 학년도 학기의 정규과정을 교내가 아닌 교외에서 이수하는 자
   3)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 2.0미만인 자(다만, 신(편)입학 첫 학기는 성적기준 적용하지 않음)
   4) 해당학기 국가장학 미 신청자
2. 지급내용 : 경비성(활동성) 장학으로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이체로 매 학기말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단, 동일학년도 학기 기준 복수의 직책을 수행하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큰 장학으로 지원한다.
   1) 첨단융합대학 학생회장 : 2,400,000원 (1명)
   2) 첨단융합대학 부학생회장 : 1,800,000원 (1명)
   3) 첨단융합대학 학생회 간부 : 400,000원 (최대 13명 이내)

4)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장 : 1,000,000원 (학부별 최대 2명)
5) 각 학부/과(전공) 부학생회장 : 700,000원 (학부별 최대 2명)
6) 학부/과(전공) 학년별 과 대표 : 200,000원 (학부/학년별 최대 2명)
* 2025-1학기부터 적용

② ' 자율장학금'은 학기 말에 지급하는 경비성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며, 기본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선발기준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직전 학기 10학점 이상, 평점 3.0이상 취득한 자 중 등록금 감면 장학 수혜 금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인 자 (장학 미수혜자 우선 선발)

2. 지급내용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비성 장학금으로 300,000원 지급(이중수혜 가능)하며 단, 장학 미수혜자 우선 선발을 권장한다.

제3장 교외 장학생 추천기준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8조(교외 장학생 추천)

① 외부 재단의 요청으로 단과대학 대표 장학생을 추천하는 교외 장학의 경우, 학과별 순서에 의거하여 장학생을 추천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신소재반도체공학전공→ 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전공 → 바이오신약융합학부 분자의약전공 →바이오신약융합학부 바이오나노공학전공 → 국방지능정보융합공학부 지능정보양자공학전공 → 국방지능정보융합공학부 국방전략기술공학과
(추천된 학생의 최종 선발 결과와 관계없이 추천 순서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장학 지급 규정

제9조(대학원 장학생 추천)

① 첨단융합대학 대학원생을 추천하는 장학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한다.

1. 응용물리학과→분자생명과학과→나노광전자학과→바이오나노학과
(추천된 학생의 최종 선발 결과와 관계없이 추천 순서에 따른다)

② '교외 장학',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우수장학금' 등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제10조(기타)

① 선발 요청 기관의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추천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
② 추천 대상 학과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 추천대상이 있는 차순위 학과로 결정한다.
③ 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규정은 별도의 학과 내규에 명시한 대로 지급한다.
④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첨단융합대학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5장 미래설계 SDP(Self Design Program) 장학 지급 규정

제11조(장학생 선발)

① 미래 설계 SDP 장학금에 관하여 본교 학생지원팀의 "미래 설계 SDP 장학금 운영 내규" 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② 선발 인원은 첨단융합대학 전체로 배정된 선발 인원을 각 전공별 2,3학년 재학생 수 비율에 따라 안배하여 각 전공별로 배정한다. 각 전공별 재학생 수는 공고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전공별 지원 인원이 해당 전공에 배정된 선발 가능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 선발 가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항목은 각 전공별 심사 내규에 따른다.
⑤ 본 내규는 2025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하며, 필요 시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장학생 심사)
① 첨단융합대학의 장학 선발 심사 내규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매년 전공별 주임 교수가 지정한다.
2. 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전공과의 연관성(40점) 목표실현가능성(20점) 목표명확성(20점) 자기 이해 및 분석(20점)으로 평가한다.
3. 동점자의 경우, 전체 성적 평균 평점 기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3.0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4.15. 개정) (시행일) 제 5장의 내용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